

의안번호	2202442
의 퇴 인	최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 8. 8.
추계번호	24B2438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(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)	- 기상청장은 제1항¹⁾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·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※ 현행은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2항 (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9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)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
5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6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
7. 그 밖에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2. 상세 사유

-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 다양화(안 제9조제2항)
 - 개정안은 기상청장의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현행 출연금 지급 외에 보조금 지급, 자금 융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임
 -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액은 최근 3년(2022~2024)간 102억 2,500만원임

[표] 최근 3년(2022~2024)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출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연구개발사업명	예산
2022	미래 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	1,050
2022~2024	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개발	6,387
2024	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	2,788
합계		10,225

자료: 기상청

- 개정안에 따라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 보조·융자가 추가될 경우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 다양화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, 기상청에 따르면 보조·융자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가 실시된 사례가 없어 현시점에서 보조·융자 방식 도입으로 인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를 알 수 없고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